

第40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4月10日 午後4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第41回城北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案)

審査된案件

1. 第41回城北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案)(議長 提議) 1 面

(16時38分 開議)

○議事係長 鄭恩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蘇正煥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 이만재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공식중인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인 제가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第41回城北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
- (議長 提議)

(16時40分)

○委員長職務代理 蘇正煥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견”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회기는 4월 18일 1일간이며, 주요안건은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4월 14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장단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또한 공식중인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卜定安委員 의장·부의장선거 운영위원장선거 기타 상임위원장들 임기가 사실상 우리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4월 14일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한 특례로 인해서 한 2개월 동안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부의장 기타 상임위원장 등 선출 건 기타 등등에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 범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黃鎬山委員 저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10일이죠. 또 계획대로 4월 18일날 한다는 것도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우선 갖습니다. 지금 우리들 의원임

기가 4월 14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기간에. 그러나 의장임기나 부의장 임기일 경우는 지금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공석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게 공석이 됩니다. 회기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아까 간담회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모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 출마의 변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우선 우리 5명이 사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39명 위원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 주고 거기에서 준비할 사람은 준비하도록 해서 회기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회기를 잡아서 3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적으로 그대로 한다면 4월 18일날 누가 의회 의사당 의사봉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지금 현 의장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회기를 잡아서 그 기간까지 연장해주는 그런 의결도 하고 또 며칠날 의장·부의장 선거 및 운영위원장 선거를 한다는 이러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蘇正煥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적 시한을 넘기지 말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10일이고 14일까지 법적 시한인데 앞으로 3~4일 밖에 안 남았거든요.

(「5일 정도예요」하는 이 있음)

5일 정도, 문제는 가능할까요?

(「회의 공고 기간이 있는데」하는 이 있음)

(「5일이니까 15일날 하면 되잖아요」하는 이 있음)

(「지난주에 했어야 했는데」하는 이 있음)

연장을 하자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어도 되겠죠?

(「연장을 해도 마찬가지죠」하는 이 있음)

○專門委員 宋 鍊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 규정에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 임기를 초과해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

니까.

(「나와 있으면 됐네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됐어요」하는 이 있음)

○參席議員 李敏衡 회의규칙 제7조에 보게 되면 “의원 총선거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職務代理 蘇正煥 그리고 아까 복정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卜定安委員 그 내용이 거의 포함됐네요. 현재 지방자치법 42조 부칙 2조에 대한 내용이 1995년 6월 30일까지로 임기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설명을 요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다 그런 것이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蘇正煥 아까 황위원 말씀이 회기를 한 3일 정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회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黃鎬山委員 그러니까 제가 간담회에서 했던 것을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얘기한 것은 법정 기일을 지켜가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10일도 넘기고 그런다니까 이번 18일 이든지 하루만 잡혀 있는 날짜를 모든 의원님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3일간 회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기결정은 18일에서 20일까지 이렇게 안을 내놓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蘇正煥 방금 3일간의 회기를 잡자는 안건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분,

○金甲濟委員 그러면 말이예요.

○委員長職務代理 蘇正煥 방금 황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金甲濟委員 나는 반대는 아닌데 반대하고

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잠깐 간담회에서 의장·부의장은 그냥 연장하는 것으로 가더니 그러면 의장·부의장까지도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黃鎬山委員 그것은 4월 18일날 본 회의에서 의장·부의장들 다시 연장을 하자는 결의가 나오면 하고 지금 운영위원장은 이의가 나왔으니까 그때 이의가 없으면 의장·부의장은 그냥 연장되는 것이고 거기서도 이의가 나오고 그러면 그때 얘기하자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는 회기일정만 정하자는 얘기죠?

○金甲濟委員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짚고 넘어 갈려고 그러냐면 나는 2일이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3일을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의장·부의장도 선거를 하느냐 라고가 되어야 준비를 하든지 아닌 말로, 아까 얘기한대로 선거운동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黃鎬山委員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의장·부의장 선거는 4월 18일날 본 회의장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지금 운영위원장 선거는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委員長職務代理 蘇正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본 회의에서 번복이 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 한 번 어떤 의사를 집약시켜가지고 본 회의에 보냄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아무 정리가 되지 않고 바로 보낸다면 운영위원회 한 번 어떤 별 의미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金甲濟委員 그래서 그러면 운영 위원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뭐 아까 대체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시간을 준다는 얘기는 의장·부의장도 선출하면 선출한다는 것으로 알고 시간을 주든지 그렇지 않고 운영위원장이라면 운영위원장만을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야 되지 나중에 가서,

○委員長職務代理 蘇正煥 그러면 회기일정은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님께서 협조요청받던 4월 18일 하루와 황호산위원께서 말씀하신 4월 18일부터 20일 3일간의 두 안전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4월 18일 하루로 1일로 잡자는 안전과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잡자는 안전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가부로 할까요?

○黃鎬山委員 제가 볼 때는 4월 18일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

○委員長職務代理 蘇正煥 그러면 수정안 3일에 대해서 회의결정 3일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대한 회기결정을 잡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吉泰委員 아니, 뭐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한가지 안은 또 뭐예요? 의장님이 제안한 1일 만 그것도 한 번 물어봐 주어야지. 그냥 의사봉만 치면 어떻게 해요?

(「산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2일간이면 충분하지 핏하러 3일씩이나 해요」하는 이 있음)

○委員長職務代理 蘇正煥 그러면 의사일정은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2分 散會)

○出席委員 11人

金 甲 濟	金 吉 泰	金 正 圭
蘇 正 煥	金 炯 九	卜 定 安
申 夫 浩	趙 基 燦	崔 哲 模
黃 義 揮	黃 鎬 山	

○缺席委員 2人

金 光 鎬 權 赫 麒

○參席議員

議	長	李 敏 衡
副	議	吳 宗 泳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	-----